

의안번호	제 290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의영 의원 등 6인
발의연월일	2019년 10월 8일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의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0
----------	-----

발의연월일 : 2019년 10월 8일

발 의 자 : 이의영,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박성원, 황규철

1. 제안 이유

- 조례 제명을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우수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과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보완하여, 학교급식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변경)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용어정의 추가(안 제2조)

다.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3조)

라. 우수 식재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마.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바.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사. 정보공개 신설(안 제8조)

아.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신설(안 제9조)

자. 만족도 조사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9-81호(2019. 9. 24. ~ 2019. 10. 2.)
-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를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3. “식재료공급업체”란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방사성물질,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5. “안전한 식재료”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별표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말한다.
6. “정보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학교급식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수립)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식재료의 검사품목·시기·방법, 검사결과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 급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기본계획 시행에 대한 점검 및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표2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우수 식재료 사용 시, 충청북도내에서 생산한 식재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①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수리된 자 등 적격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을 유지하고 납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급업체를 사후 평가 할 수 있다.

제6조(식재료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매년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사전검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나 학교직원의 감사의뢰가 있을 시, 이들의 의견이 감사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제1항의 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공동구매 등의 활성화) 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하도록 공동구매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망이나 안내장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운영 계획(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지원, 위생 및 안전관리 등 포함)
2. 법 제13조에 따른 식생활 지도 관련 정보
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
4.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5.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결과
6.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별 계약 관련 사항
7. 제10조에 따른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만족도 조사)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급식운영에 반영하여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운영과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학교급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 3. 21.>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①「[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학교급식의 질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식재료의 구매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 ①**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식단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식문화(食文化)의 계승·발전을 고려할 것
2.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
3.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4.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
5.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할 것

제6조(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등) ①**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및 향상을 위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11. 22.>

1.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의 공개
2. 학교급식관련 서류의 비치 및 보관(보존연한은 3년)
 - 가. 급식인원, 식단, 영양 공급량 등이 기재된 학교급식일지
 - 나. 식재료 검수일지 및 거래명세표

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알리고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신설 2013. 11. 22.>

1. 공지방법: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2. 표시방법: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식단표를 식당 및 교실에 게시할 것

제8조(출입·검사 등) ① [영 제14조 제1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되, 학교급식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제2호의 확인·지도시 함께 실시할 수 있음
2.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관리기준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 연 2회 이상

② [영 제14조 제2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3. 11.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해당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비치된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수거 및 검사의뢰 등)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미생물 검사
2.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 검사

② 제1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한 관계공무원은 검체를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封函)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날인이나 서명으로 봉인(封印)

한 후 지체없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의 보건소 등 관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검사에 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행정기관에 수거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2.>

③제2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를 의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농수산물의 원산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1., 2011. 11. 22., 2015. 6. 22., 2016. 12. 2.>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 2의2. 「소금산업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3. 「소금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8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 5의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 5의3.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개정 2016. 2. 3.>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③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5조(위해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식품 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식품 등 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 건강을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 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금지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시적 금지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평거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사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위해가 없다고 인정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에 따른 위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식품의 위해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나 위해와 관련된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로서 제15조에 따른 위해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6.7.]

제90조의2(정보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4., 2011. 12. 31., 2012. 12. 11.>

1.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4. “교육관련기관“이란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4조·「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6.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안전성 검사,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지원금, Non-GMO 식품구입비 지원금,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등 소요경비

3. 관련조문

- 안 제4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 안 제6조(식재료검사)
- 안 제11조(교육 및 연수)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2020년 비용 소요 예상액

나. 추계결과: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23,369,040천원(연 4,673,808천원)

※ 2020년(1차년도) 소요 예상액에서 매년 2% 추정치 반영

(신선식품지수 2.5% + 소비자물가지수 1.4%)/2 = 2%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69%, 기초자치단체전입금 31%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1,396,587	1,424,519	1,453,009	1,482,069	1,511,711	7,267,895	
친환경식재료구입비지원	1,396,587	1,424,519	1,453,009	1,482,069	1,511,711	7,267,895	
세 출	4,490,557	4,580,368	4,671,976	4,765,415	4,860,724	23,369,040	
친환경식재료구입비지원	1,396,587	1,424,519	1,453,009	1,482,069	1,511,711	7,267,895	
식재료안전성검사	2,302	2,348	2,395	2,443	2,492	11,980	
Non-GMO식품구입비지원	3,082,838	3,144,495	3,207,385	3,271,532	3,336,963	16,043,213	
학교급식관계자연수	8,830	9,007	9,187	9,370	9,558	45,952	
재원 조달	4,490,557	4,580,368	4,671,976	4,765,415	4,860,724	23,369,040	
의존 재원	소 계	4,490,557	4,580,368	4,671,976	4,765,415	4,860,724	23,369,04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3,093,970	3,155,849	3,218,967	3,283,346	3,349,013	16,101,145
	특별교부금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1,396,587	1,424,519	1,453,009	1,482,069	1,511,711	7,267,895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참고자료] 2020년 소요비용 산출근거

구분	소요비용 (단위:천원)	산출내역	비고
세출	4,490,557		
친환경식재료구입비지원	1,396,5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8개 교육지원청 ○ 사업내용: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차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주 (초,중 55교 171,594천원) - 제천 (유,초,중 72교 124,381천원) - 보은 (유,초,중 20교 90,622천원) - 영동 (유,초,중 35교 216,436천원) - 진천 (유,초,중 38교 150,865천원) - 괴산증평 (유,초,중 31교 264,383천원) - 음성 (유,초,중,특수 39교 339,074천원) - 단양 (유,초,중 17교 39,232천원) 	※ 청주, 옥천지역은 현물 차액(대응)지원으로 제외
식재료안전성검사	2,3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초,중,고,특수학교 자체조리 417교, 학교급식식재료 납품업체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금속, 방사능 안전성검사 표본 74건 - HACCP검증 조리식품 미생물검사 표본 42교 - 학교급식 위생점검 시약 ○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능검사 수거비(27천원, 74건) 1,998천원 - 미생물검사 용품(304천원, 1식) 304천원 - 학교급식 위생점검 시약(770천원, 1식) 770천원 	
Non-GMO식품구입비지원	3,082,8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794교(유312, 초261, 중127, 고84, 특수10) ○ 사업내용: 국내산 식재료로 제조된 Non-GMO 장류 구입비 지원 ○ 지원액 3,082,838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 168,994천원(15,212명×60원×185일) - 초 961,946천원(86,651명×60원×185일) - 중 707,273천원(42,015명×90원×185일) - 고 1,122,397천원(72,304명×90원×185일) - 특수 20,650천원(1,240명×90원×185일) 	
학교급식관계자연수	8,830	<p><학교급식담당자 워크숍> 4,57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영양교사, 영양사, 교육(지원)청 급식담당자 450여명 ○ 사업내용: 학교급식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건강증진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급식관계자 워크숍 ○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5천원, 450부) 2,250천원 - 현수막(100천원, 1개) 100천원 - 원고료(14천원, 4명, 2.5매) 140천원 - 용품(500천원, 1회) 500천원 - 강사수당(특별2급, 3명, 1시간) 700천원 - 교통비(40천원, 2명) 80천원 - 협의회(20천원, 40명, 1회) 8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담당자 워크숍 ※ 학교급식담당자 원격연수 ※ 학교급식납품업체 교육

구 분	소요비용 (단위:천원)	산출내역	비고
		<p><학교급식담당자 원격연수> 2,02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영양교사·영양사 400여명 ○ 사업내용: 학교급식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건강증진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급식관계자 원격연수 ○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강의콘텐츠제작(100천원, 7차시) 700천원 - 교통비(40천원, 3명) 120천원 - 튜터수당(20천원, 10일, 2명) 400천원 - 협의회(20천원, 40명, 1회) 800천원 <p><학교급식납품업체 교육> 2,24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150여명 ○ 사업내용: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의 위생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연수 실시 ○ 산출내역: 교재(8천원, 150부) 2,240천원 	